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김호진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2590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8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2. 제안사유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21의2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사항 반영(별표1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8. 20.~ 8. 27.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○ 상위법이 3회 개정되었으나 조례 미정비로 인해 법령간 충돌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 필요

○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매매업계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도모 및 소비자 서비스 향상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자동차관리사업¹⁾을 하려는 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1조²⁾에 따라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장위치도 및 평면도, 임대차 계약서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·신청을 하고 관계 공무원은 사업장 면적, 시설등록기준 적합여부, 결격여부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
-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자

1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자동차관리사업”이란 자동차매매업·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.

2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1조(등록신청등)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³⁾한 바 있음

- 세부 내용을 보면 ‘18년 6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사무실 기준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,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⁴⁾하였으며, ‘18년 11월 매매업자의 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변경⁵⁾하였고, ‘20년 6월 정비·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⁶⁾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를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음

※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21의2 개정현황

구 분	2018.6.27.	2018.11.23.	2020.6.26.
개정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시시설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•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마련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매업자의 기준을 “5명”을 “3명”으로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비·성능점검 시설 설치 요건을 삭제함

- 또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제3항⁷⁾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

3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(2018.6.27., 2018.11.23., 2020.6.26. 일부개정)

4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21의2 [시행 2018.6.27.] [국토교통부령 제531호,2018.6.27.일부개정]

5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21의2 [시행 2018.11.23] [국토교통부령 제560호,2018.11.23.일부개정]

6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21의2 [시행 2020.9.27.] [국토교통부령 제744호,2020.6.26.일부개정]

7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(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)

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

111조의2 별표 21의2에서는 특별시·도 등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'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'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법과 현행 조례 간 상충 및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인정됨

다만 관련법이 세 차례나 개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개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조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

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(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)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